

# 행정국 시의회 보고

---

2017. 7. 19.

행 정 국

# '17년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예비비 사용현황 보고

-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 의무
-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여 예비비 사용

## 추진근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 보궐선거 개요

- 선거일 : '17. 5. 9.(화) 06:00~20:00  
※ '17.3.14~4.9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 선거구 : 구로구 제3선거구(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 선거인수 : 122,862명(33개 투표구)
- 후보자 득표율 : 황규복 44.82%, 곽병기 19.79%, 정기호 22.50%, 김배영 12.87%

## 주요내용

- 사용내용 : 득표수가 10%이상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  
- 득표수가 15/100 이상은 100%, 10/100 이상 15/100 미만은 50%, 10/100미만은 0%
- 사용액 : 159,58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준비 및 실시경비('17.3.31 납부)			후보자 보전 예상액(D)	예비비 사용액 (E=D-C)
	기 납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구로제3선거구	14,519	3,440	11,079	170,664	159,585

※ 선관위에 기 납부한 선거 준비·실시경비 집행잔액 11,079천원을 제외한 159,585천원 추가 납부

○ 후보자별 보전 예상액

(단위 : 천원)

선거구명	대 상 자	보전 예상액	선거비용 제한액
구로제3선거구	합 계(4명)	170,664	57,000
	100% 보전대상(득표율)	148,889	
	더불어민주당 황규복(44.82)	52,126	
	자유한국당 곽병기(19.79)	45,179	
	국민의당 정기호(22.50)	51,584	
	50% 보전대상(득표율)	21,775	
	바른정당 김배영(12.87)	21,775	

□ 사용사유

- '17년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경비는 서울시 부담

\*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57백만원, '17.3.22)

-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법정기한까지(선거일 후 70일, '17.7.18) 선거비용을 보전 할 수 있도록 市선관위에 해당 경비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납부(市 → 市선관위) ..... '17. 6.26
-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市선관위 → 후보자) .... '17. 7.18
- 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경비 집행잔액 반환(市선관위 → 市) ..... '17. 8. 7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관련 법령

### □ 공직선거법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